

#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2026년 화성시 제24호 근린공원(송방천)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허가]를 통해 합법적이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허가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시 설 명	위 치	면 적	허 가 시 간
제24호 근린공원(송방천) 인조잔디 축구장 1면	산척동 778	2,356m <sup>2</sup>	18:00~20:00 (평일 2시간)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월 일로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한정)

제4조(사용료) 사용료는 입찰에 따른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낙찰금액 (금 \_\_\_\_\_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화성도시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지정기한 내에 일시에 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이행 보증금) ① 사용인은 1년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상의 계약 이행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기한 내에 납부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허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이행보증금은 화성도시공사에게 귀속한다

③ 사용인이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시설명도를 지연시킬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금 청구와 별도로 계약이행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자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시설의 사용허가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
4.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설치·폐지하는 행위
5. 각종 광고물의 설치 및 광고행위
6. 기타 화성도시공사가 판단하였을 때 부적절한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속 사용허가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
3. 관리위탁(사용허가)조건 제10조(운영자의 행위제한) 각 항을 위반할 때
4. 타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이용할 때
5. 사용인의 민·형사상의 문제로 인해 허가 받은 재산을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화성도시공사가 판단하였을 때
6. 영업과 관련하여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공공시설의 이용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관리주체의 시정 요구·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허가 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화성도시공사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화성도시공사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화성도시공사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이행할 때만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화성도시공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사용인은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화성도시공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사고당 1천만원 이상)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 등에 대한 지시·지도감독)** ①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화성도시공사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주최나 주관으로 하는 행사, 시설 보수공사 등

② 허가권자는 축구장 사용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관계법규의 준용)**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한다.

2026. . .

이상 위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유재산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성실히 준수하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허 가 자

피 허 가 자 (사 용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주 소

주 소

화성도시공사 사장

(인) 대 표 자

(인)